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12. . (제 회)	

경 찰 공 무 원 임 용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진영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12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해 「경찰공무원법」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자치경찰 사무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및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총경에 대한 추천권, 국가수사본부 내의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 규정 신설(안 제4조)
- 나. 국가수사본부장 경력경쟁채용 절차 신설(안 제38조의2)
- 다. 계급정년 연장 대상 범위 조정(안 제49조)
- 라.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자구수정(안 제3조~제48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,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진행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예정

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제4조제1항”을 “제4조제1항부터 제5항”으로, “제6조제1항”을 “제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, 제3항, 제4항,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중전의 제1항) 중 “법 제6조제3항”을 “법 제7조제3항 전단”으로, “지방경찰청”을 “시·도경찰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지방경찰청장”을 “시·도경찰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9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0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5항”으로 한다.

①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해당 시·도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시·도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[시·도자치경찰위원회, 시·도경찰청, 경찰서(지구대·파출소를 제외한다.)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모두 포함한다. 이하 같다.] 중 경정의 전보·파견·휴직·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

권을(신규채용, 면직 제외) 위임할 수 있다.

③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내의 경정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고,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총경을 보하는 경우 국가수사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.

④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받은 시·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경감 및 경위의 승진임용권을 제외한 나머지 임용권을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⑤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재위임 받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·도지사와 시·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·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⑥제5항에 따라 시·도경찰위원회가 임용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시·도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.

⑧시·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지구대장·파출소장을 보할 때에는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.

제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4조제1항제2호”를 “법 제19조제1항제2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법 제8조제2항”을 “법 제10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법 제8조제3항제1호”를 “법 제10조제3항제1호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법 제4조”를 “법 제5조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법 제8조제3항”을 “법 제10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제2호 중 “법 제24조제1항제2호”를 “법 제30조제1항제2호”

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8조제3항제2호”를 “법 제10조제3항제2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법 제8조제3항제3호”를 “법 제10조제3항제3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“법 제8조제3항제6호”를 “법 제10조제3항제5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법 제8조제3항제7호”를 “법 제10조제3항제6호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법 제8조”를 “법 제10조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법 제9조제1항”을 “법 제1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법 제17조제3항”을 “법 제22조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17조제2항”을 “법 제22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2항 본문 중 “법 제17조제2항”을 “법 제22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8조제3항제6호”를 “법 제10조제3항제5호”로 한다.

제33조 본문 중 “법 제15조제1항”을 “법 제20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2항 중 “법 제8조제2항”을 “법 제10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37조 전단 중 “법 제8조제2항”을 “법 제10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3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“법 제8조제3항제1호·제2호 및 제5호”를 “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“법 제8조제3항제3호·제6호 및 제7호”를 “법 제10조제3항제3호·제5호 및 제6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“법 제8조제3항제4호”를 “법 제10조제3항제4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법 제8조제3항”을 “법 제10

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의2(국가수사본부장의 경력경쟁채용등) ① 국가수사본부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의 방법·시기·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.

1. 서류심사

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응시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,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하되,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7명으로 제한하여 합격자로 결정한다.

2. 신체검사

약물검사 및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른 신체검사서의 결과로 한다.

3. 종합심사

직무수행능력, 적격성 및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2~3명의 임용후보자를 결정한다.

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을 위해 경찰청에 서류심사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 임용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를 두며,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위원의 자격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.

④ 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40조의2 중 “법 제8조제3항”을 “법 제10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43조제4항제4호 단서 중 “법 제8조제3항제4호”를 “법 제10조제3항제4호”로 한다.

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2조제1항제2호”를 “법 제28조제1항제2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2조제1항제3호”를 “법 제28조제1항제3호”로 한다.

제48조제1항 중 “법 제24조제3항”을 “법 제30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49조 중 “법 제24조제3항”을 “법 제30조제3항”으로, “보안”을 “보안, 자치경찰사무”로, “경찰공무원으로서 전문직위에 임용된 사람”을 “경찰공무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용권 위임의 적용례) 제4조 제1항, 제4항 및 제5항 개정규정은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제19조의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 및 구성되었을 때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경과) ① (생략)	제3조(경과) ① (현행과 같음)
②임용권자(제4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 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임용제 청권자[「경찰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 다]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 경과를 부여하여야 한 다.	②-----제4조제1항부터 제5 항----- ----- ----- ----- 제7조제1항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③ 삭제	
④ · ⑤ (생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제4조(임용권의 위임) <신설>	제4조(임용권의 위임) ①경찰청장 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해당 시·도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시· 도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[시 ·도자치경찰위원회, 시·도경 찰청, 경찰서(지구대·파출소를 제외한다.)에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을 모두 포함한다. 이하 같다.] 중 경정의 전보·파견· 휴직·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

① 경찰청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대학·경찰인재개발원·중앙경찰학교·경찰수사연수원·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(이하 “소속기관등”이라 한다)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·파견·휴직·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(신규채용, 면직 제외) 위임할 수 있다.

② ----- 법 제7조제3항 전단-----

----- 시·도경찰청-----

-----.

③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내의 경정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고,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총경을 보하는 경우 국가수사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.

④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받은 시·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경감 및 경위의 승진임용권을 제외한 나머지 임용권을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지방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③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 조정,

⑤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재위임 받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·도지사와 시·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·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라 시·도경찰위원회가 임용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시·도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.

⑦ 시·도경찰청장-----

-----.

⑧ 시·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지구대장·파출소장을 보할 때에는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.

⑨ 제2항-----

-----.

⑩ 제1항부터 제5항-----

인사고료 또는 파견을 위하여
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
할 수 있다.

제6조(임용시기의 특례) 제5조제1
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
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1.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
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다
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
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

가.·나. (생략)

2.·3. (생략)

4.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경찰
간부후보생, 「경찰대학 설치
법」에 따른 경찰대학의 학생
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1
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
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
중 사망한 경우: 사망일의 전
날

제8조(계급정년 연한의 계산) 법
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재임
용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

-----.

제6조(임용시기의 특례) -----

-----.

1. 법 제19조제1항제2호-----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2.·3. (현행과 같음)

4. 법 제10조제2항-----

제8조(계급정년 연한의 계산) 법
제10조제3항제1호-----

한은 재임용 전에 해당 계급의
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를
합하여 계산한다.

제9조(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
구성) ① 법 제4조에 따른 경찰
공무원인사위원회(이하 “인사
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
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
원으로 구성한다.

② (생략)

제15조(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
위 제한) 법 제8조제3항에 따른
채용시험(이하 “경력경쟁채용
시험등”이라 한다)을 통하여 채
용(이하 “경력경쟁채용등”이라
한다)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경
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당시의
임용예정직위 외의 직위로 임용
할 수 없다.

제16조(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사람은 경력경쟁채용
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
1. (생략)

2.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
정년퇴직한 사람

-----.

제9조(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
구성) ① 법 제5조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
위 제한) 법 제10조제3항-----

-----.

제16조(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)

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법 제30조제1항제2호-----

②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
경력경쟁채용등은 「국가기술
자격법」이나 그 밖의 법령에
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
한다.

③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
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국가
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
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
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
무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에 상
응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
이 3년(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
부문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려
는 경우에는 2년) 이상인 사람
으로 한다. 다만, 의무경찰로 임
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
람을 순경으로 경력경쟁채용등
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
전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까지
의 기간이 3년을 넘는 사람을
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으로 할
수 없다.

1. 2. (생략)

④ (생략)

② 법 제10조제3항제2호-----

-----.

③ 법 제10조제3항제3호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⑤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
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본인
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
중단된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,
이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경위
이하로 한다.

⑥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
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해당
기관이 관할 또는 소재하는 읍
· 면지역에서 본인 · 배우자 또
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
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이어야
하며, 이 경우의 임용예정계급
은 순경으로 한다.

⑦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른
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행정
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
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
하여야 한다.

⑧ (생 략)

제17조(채용후보자의 등록) ①법
제8조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
험,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
발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등
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안전부령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

<삭 제>

⑥법 제10조제3항제5호-----

-----.

⑦법 제10조제3항제6호-----

-----.

⑧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채용후보자의 등록) ①법
제10조-----

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
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8조(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)

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채용후
보자 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
작성하되, 채용후보자의 서류를
심사하여 임용 적격자만을 등재
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24조(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)

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1년
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
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
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
위에 보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년 이
상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
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육
훈련기관의 인력현황을 고려하
여 교수요원으로 보직할 수 있
다.

제27조(전보의 제한) ① (생략)

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육
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임용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)

① 법 제12조제1항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)

① 법 제22조제3항-----

-----.

② -----

-- 법 제22조제2항-----

-----.

제27조(전보의 제한) ① (현행과
같음)

② 법 제22조제2항-----

된 사람은 그 임용일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. 다만, 기구의 개편, 직제·정원의 변경이나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폐지가 있거나 교수요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채용된 경찰공무원은 그 채용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(휴직기간,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) 안에는 채용조건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 외의 기관 또는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.

④ (생략)

제33조(시험실시권) 경찰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순경(항공경찰분야에 종사할 사람은 제외한다)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과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순경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

-----.

-----.

③ 법 제10조제3항제5호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33조(시험실시권) -----
법 제20조제1항-----

험등의 실시권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하고,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을 경찰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. 다만, 경찰청장은 시험출제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출제업무를 할 수 있다.

제35조(시험의 방법) ① (생략)

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경위예의 채용시험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.

③ (생략)

제37조(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)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공고, 시험의 구분 등에 관하여는 제34조, 제35조제1항, 제36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34조제1항의 “공개경쟁채용시험”, 제35조제1항의 “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”

--. -----

--.

제35조(시험의 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10조제2항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37조(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) 법 제10조제2항----

----. -----

및 제36조제1항의 “경정 및 순
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”은 각
각 “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
선발시험”으로 본다.

제38조(경력경쟁채용시험등) ①경
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신체검사
및 체력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
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. 다만,
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
력경쟁채용등은 서류전형의 방
법으로 하고, 총경 이하의 경찰
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시
험실시권자가 업무내용의 특수
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
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
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법 제8조제3항제1호·제2호
및 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
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
면접시험. 다만, 필기시험 또
는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
고,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
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
는 경우에는 두 시험을 모두
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2. 법 제8조제3항제3호·제6호

-----.

제38조(경력경쟁채용시험등) ①-

-----.

-----.

1. 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
호-----

-----.

-----.

2. 법 제10조제3항제3호·제5호

및 제7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·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. 다만,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3.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·필기시험 및 면접시험. 이 경우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과 중복되는 과목은 면제한다.

②·③ (생략)

④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 다만, 그 시험의 공고는 시험실시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.

<신설>

및 제6호-----

----. -----

-----.

3.법 제10조제3항제4호-----

--. 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법 제10조제3항 -----

--. -----

--.

제38조의2(국가수사본부장의 경력경쟁채용등) ① 국가수사본부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의 방법·시기·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험

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.

1. 서류심사

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응시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,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하되,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7명으로 제한하여 합격자로 결정한다.

2. 신체검사

약물검사 및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른 신체 검사서의 결과로 한다.

3. 종합심사

직무수행능력, 적격성 및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2~3명의 임용후보자를 결정한다.

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을 위해 경찰청에 서류심사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 임용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를 두며,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위원의

제40조의2(응시자격의 예외) 경찰
청장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
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공무
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
경우로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
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
인정될 때에는 연령·학력 및
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
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43조(시험의 합격결정) ① ~
③ (생략)
④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
험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
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
위에 따른다.

1. ~ 3. (생략)
4.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
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: 필
기시험 성적 또는 실기시험
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
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

자격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.

④ 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
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
는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9조
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40조의2(응시자격의 예외) ---
---- 법 제10조제3항 -----

-----.

제43조(시험의 합격결정) ① ~
③ (현행과 같음)
④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-----

한 성적. 다만, 법 제8조제3항 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로 한다.

5. · 6. (생략)

제47조(직권면직사유)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· 2. (생략)

②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· 2. (생략)

제48조(정년 연장)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년 연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력수급관계, 직무의 특수성, 연장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49조(정년 연장의 대상)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은 수사, 정보, 외사(外事), 보안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

----- 법 제10조제3항 제4호-----

-----.

5. · 6. (현행과 같음)

제47조(직권면직사유) ①법 제28조제1항제2호-----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②법 제28조제1항제3호-----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제48조(정년 연장) ①법 제30조제3항-----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49조(정년 연장의 대상) 법 제30조제3항-----
----- 보안, 자치경찰사무 ----- 경찰공무

<u>원으로서 전문직위에 임용된 사</u> <u>람</u> 중에서 정년 연장 대상 공무 원을 지정한다.	<u>원</u> ----- ----- -----.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경찰청 인사담당관실 교육정책담당관실	
연 락 처	02-3150-1207, 2832